



금융감독원

# 보도자료



대한변호사협회  
Korean Bar Association

보도	2024.9.3.(화) 조간	배포	2024.9.2.(월)
----	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	책임자	팀 장	최승록	(02-3145-8129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김규현	(02-3145-8121)
담당부서	대한변호사협회 정책팀	책임자	팀 장	황승환	(02-2087-7830)
		담당자	대 리	강창희	(02-2087-7831)

**불법사채 해결 또는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 
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에 주의하세요!**

**■ 소비자경보 2024-30호**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**소비자경보 내용**

- 최근 솔루션업체가 난립하여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  -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하고,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(수수료 등)을 요구한 후,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잠적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.
  -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하는 경우 변호사법\* 위반 소지가 높으며, 불법사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만 지불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\* 제109조(벌칙) 제1호 :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·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,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
- 또한, 대출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불법중개수수료도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**<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>**

- ①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**절대 응하지 마세요!**
- ②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**절대 응하지 마시고, 경찰(☎112)·금감원(☎1332)에 적극 신고하세요!**
- ③ 고금리,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시 **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!**

## I. 주요특징 및 피해사례

1

###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관련

#### 인터넷 광고,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

- 솔루션업체는 인터넷 검색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합니다.
- 일부 솔루션업체의 경우 정부기관들\*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, 불법업체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한편,
  - \* 금감원, 법무부, 검찰, 대한변호사협회 등
  - 피해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여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.

#### 채무보다 적은 금액의 수수료, 착수금을 요구

- 솔루션업체는 보통 10~30만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, 착수금,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데,
  - 피해자들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합니다.

#### 사채업자와의 조율 실패 시 잠적

-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여 조율을 시도한다고 하나,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하여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

####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납부를 독촉

- 솔루션업체 의뢰 후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며,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기도 합니다.

**(피해사례) 불법사채 채무정리를 빌미로 수수료 요구**

- ◆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 
 ◆◆◆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
  - 의뢰 후 해당 센터에서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하여 연장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30만원을 요구
  - 피해자는 수수료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이어서 낼 수 없다고 하니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, 이후 수수료를 내지 않아 연장약속을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식으로 협박
  - 이후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전화하거나 카톡을 보내 수수료 요구

인터넷 광고로  
피해자 유인

채무정리 이유로  
수수료 요구

수수료 독촉 및  
지인 추심

**2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관련**

**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인**

□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,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합니다.

**대출중개 명목으로 수수료 편취**

-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합니다.
  -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을 받지 못하고, 수수료 피해만 입게 됩니다.

**(피해사례)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편취한 사례**

- ◆ 피해자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조건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업자에 연락을 하였으며 3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
  - 해당 업자는 대출금액 20%인 6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, 급한 나머지 60만원을 먼저 입금
  - 수수료 입금 후 대출 실행여부를 문의하였으나, 해당 업자는 기다려달라고 답변을 한 이후 연락이 두절

대출을 명목으로  
수수료 요구

수수료 편취  
후 잠적

## II.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

- 금융감독원은 상기 사례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.
- 소비자분들께서도 다음의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유의해 주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### ①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!

- 대다수 솔루션업체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가지만, 결국 사채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이러한 업체들의 경우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(변호사법 제109조, 제112조) 소지\*가 높습니다.
  - \*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,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을 취급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
- 따라서 불법사채 솔루션업체의 수수료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고 피해발생시 경찰(☎112)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(☎1332) 또는 대한변호사협회(☎02-3476-4000)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②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니 절대 응하지 마시고, 경찰(☎112)·금감원(☎1332)에 적극 신고하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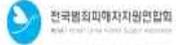
-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(대부업법 제11조의2)되어 있으며, 착수금, 전산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.

- **불법대출중개수수료, 고금리**(연 20% 초과), **불법채권추심** 등의 **불법 행위**는 거래 내역, 통화·문자 기록 등 **증빙자료를 확보**하시어
  - **경찰(☎112)** 또는 **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→3번)**로 **적극 신고**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㉓ 고금리,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!**

- **고금리, 불법채권추심 피해(우려)**가 있다면 **정부가 무료로 지원**하는 **채무자대리인 제도\***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 - \*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대리
  - **금융감독원 홈페이지** 및 **불법사금융 신고센터(☎1332→3번)** 또는 **법률구조공단(☎132)**을 통해 **신청**이 가능하니 불법사금융으로 고통 받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는 **적극 활용**해주시기 바랍니다.

**홈페이지 주요 화면**

<p>홈페이지 메뉴 화면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홈페이지 주요 메뉴</b>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센터소개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피해구제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불법업체 제보하기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피해상담 신청</div> 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정부기관 링크 화면</p>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    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금감원 등 정부기관 링크 제공</b>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포상금 지급 화면</p>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<b>불법업체 제보안내</b>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불법업체 제보를 받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</b></p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5px; margin-top: 20px;"> <p><b>포상금지급액 최대 2,000만원까지 일괄지급</b></p> </div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피해사례 화면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번호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제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작성자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작성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tr> <td> 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실시간 피해접수 사례를 공유</b></td> <td> </td> <td> </td> </tr> <tr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td> 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번호	제목	작성자	작성일										<b>실시간 피해접수 사례를 공유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번호	제목	작성자	작성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b>실시간 피해접수 사례를 공유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 > 민원·신고) '불법금융신고센터'에서 제보·신고 가능

① (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) 고금리 수취,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

※ 불법스팸문자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(☎118, [spam.kisa.or.kr](http://spam.kisa.or.kr))로 신고

② (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)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·신고

③ (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)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

**[참고]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 내 신청 화면**

1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 > 민원·신고)



2) '불법금융신고센터' 클릭

①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민원·신고	②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민원·신고	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민원·신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원·신고 +</li> <li>e-금융민원센터 ☞ +</li> <li>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☞</li> <li><b>불법금융신고센터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보 상담하기</li> <li>· 제보 상담내용 조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원·신고 +</li> <li>e-금융민원센터 ☞ +</li> <li>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☞</li> <li><b>불법금융신고센터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이용안내</li> <li>· 제보하기</li> <li>· 제보내역조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민원·신고 +</li> <li>e-금융민원센터 ☞ +</li> <li>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☞</li> <li><b>불법금융신고센터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이용안내</li> <li>· 피해신고</li> <li>· 신고내역조회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#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

**0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!**

- 서민금융진흥원(☎1397, www.kinfa.or.kr)에서 소액생계비대출·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!

**02 문자,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!**

- “당일대출”, “누구나 대출”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.

**0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!**
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(fine.fss.or.kr)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!

**0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!**

-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또는 합법적인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부당행위 또는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,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(☎1332→3번)으로 신고하세요!

\* (지자체 등록 대부업체) 해당 지자체, (금융위 등록 대부업체) 금감원

**0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%입니다!**

- 법정 최고금리인 연20%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.

**0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!**

- 대출·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
**0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,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!**

- 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,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.

**0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·보관하세요!**

- 대부계약체결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.

**0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!**

- 계약서, 입·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·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.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(☎1332→3번) 또는 경찰서(☎112)에 신고하세요!

**10 피해 발생 시,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!**

- 최고금리 위반,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(우려)를 당한 경우,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\*,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.

\* 금감원 홈페이지,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→3번) 또는 법률구조공단(☎132)를 통해 신청